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Ways to Improve Premium Setting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김진현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보험료 부과 체계는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보험료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고, 피부양자제도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수년간 부과 체계 개편 논의가 추진된 결과, 2018년 7월부터 새로운 부과 체계가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에서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와 재산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최저보험료가 설정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하여 무임승차를 축소하였다. 부과 체계 개편은 1단계(2018. 7.~2022. 6.)를 거쳐 2단계(2022. 7.~)로 진행될 예정인바, 앞으로 재산보험료 축소, 자동차보험료와 피부양자제도 폐지, 보수 외 소득의 부과 확대 등 소득 중심으로 통합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다. 소득도, 재산도 없이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가 마지막으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는 월 4만 9000원이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경제적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은 없어지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소득과 고액 재산이 있는 자가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직한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이 낮

아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직장인 중에서는 적지 않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 받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을 때 보험료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후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7200만원(2018년 7월부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981년과 1982년에 실시된 6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을 때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낮아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가 부과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1998년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가 통합되었을 때 개발된 통합부과모형에 의해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세대와 소득 무자료 세대는 평가소득(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다(신영석, 1998, 2004; 신현웅, 신영석, 2008). 이러한 부과 방식은 2018년

6월까지 유지되었으며, 2018년 7월부터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부과 체계가 시행되었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첫째,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에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와 재산의 비중을 낮추었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였다. 셋째, 고소득, 고액 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넷째, 보건복지부의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단축하여 1단계(4년)와 2단계로 나누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보험료 부과 체계에 의하면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월 1만 31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중심으로 쟁점 사항에 대해 2018년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보험료 부과 체계의 기본 구조

가. 보험료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과약률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하에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는 건강보험제도

표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보수월액) (개인사업장은 사업소득) 보수 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재산, 자동차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 설정
산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보수월액 × 정률 보수 외 소득: 보수 외 소득 × 정률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부과 점수 × 점수당 금액
납부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50%, 근로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미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자 인정하지 않음

자료: 김진현. (201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방향 및 전망분석.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도입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차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은 종전의 불공평한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 납부 의무자가 다르고, 피부양자 혜택이 직장가입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원화된 부과 체계로 되어 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과 보수 외 소득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단순한 산정 방식을 취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제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와 분담 방식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영자이므로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 근로

소득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절반만 부담한다. 물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과 대상과 보험료율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사용자 부담이 논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누군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준다는 것은 합리성 여부를 떠나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수준과 형평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의료보험증 반납 운동,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비 전액과 의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후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고보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국고지원제도의 근원이 되었다.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국고지원제도는 관리·운영 체계 통합 이후 직장가입자들이 국고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국고지원 대상에 지역가입자를 명시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고지원제도가 존재했을 당시 보험료 수준의 연장선에서 결정되어 왔으므로 현재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국고지원 효과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면제 문제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

3. 최근 개편된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과 성과

가. 부과 체계 개편의 추진 경과

1998~2000년 건강보험조합 통합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 구분 없는 단일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결국은 단일한 부과 방식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기존의 방식을 적당히 보완하는 선에서 미봉되었다(정형선, 2015). 2002년 직장보험료 상한선 도입, 2006년 지역보험료 재산 점수 조정, 2013년 연간 4000만 원 이상 공적 연금을 받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으나 2000년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통합 시에 형성된 제도가 큰 변화 없이 2018

년 6월까지 유지되었다(김진현, 2018).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과 불형평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사공진, 2004; 신현웅, 신영석, 2008; 홍백의, 배지영, 박미희, 강준모, 2012; 최호영, 이소림, 송기민, 2013; 정창률, 권혁창, 남재욱, 2014; 이규식, 2015; 정순방, 2016; 유재권, 2017a, 2017b; 정창률, 문용필,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만도 연간 70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았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2015).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은 근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은 물론 성, 연령, 자동차까지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 없이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가구원 모두의 자산이 부과 요소가 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신뢰를 받을 수 없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2015).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과 과약률이 문제가 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이원화된 부과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확대, 국세청의 징세 기술 발달 등으로 지금은 소득과 과약률이 상당히 개선된 상태이며,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불공평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김진현, 2015).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2013. 7. 25.~2015. 1. 27.)을 가동하여 다양한 재정 추계 시나리오에 근거한 부과 체계 개선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27일 개선기획단의 개편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전격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2015년 2월에 보건복지부와 여당, 전문가로 당정협의체(2015. 2. 6.~2015. 7. 9.)를 구성하여 개선기획단이 제시한 개편안을 근거로 하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2017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 체계 3단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2017년 3월 30일 여야 합의에 의해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고, 2018년 7월부터 새로운 보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나. 부과 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보험료 부과 체계의 기본 방향은 가입자 간 형평성, 변화에 대한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4년 주기의 2단계 개편안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소득의 비중을 높이면서 소득 외(재산, 자동차)의 요소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가

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였던 평가소득을 폐지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단축하여 1단계(2018. 7.~2022. 6.)와 2단계(2022. 7.~)로 나누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다. 부과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1) 지역가입자

(가) 평가소득의 폐지,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 축소

2018년 7월 이전에는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였는데, 소득과 무관한 성·연령이 포함된다거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늘어나고, 소득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것과 같이 불합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다. 특히 성별, 연령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 출생이나 연령 상향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재산과 자동차는 평가소득과 각각의 보험료로 이중 부과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예컨대, 2016년 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율은 재산과 자동차 58%, 성과 연령 10%, 소득 3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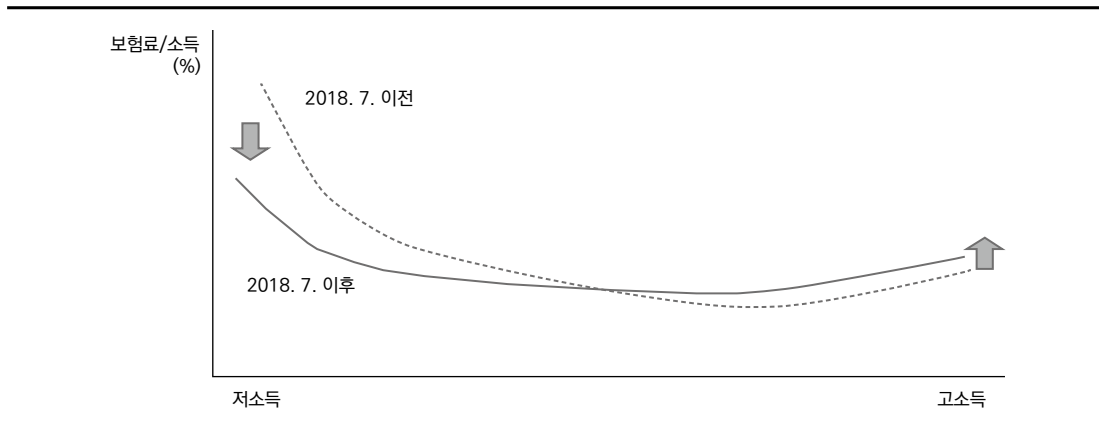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개선되어 소형이나 생계용 자동차는 면제되고, 궁극적으로는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표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주요 부과 기준		1단계 개편(2018. 7. 1.~2022. 6. 30.)	2단계 개편(2022. 7. 1.~)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보험료	연소득 100만 원 이하(월 1만 3100원) * 연간 총수입 1000만 원 이하	연소득 336만 원 이하(월 1만 7460원) * 연간 총수입 3360만 원 이하
		경감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 수준 유지
	재산보험료	500만~1200만 원 차등 공제	5000만 원 공제
	자동차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보험료 △ 30% 인하 4000만 원 이상 고가차 100% 부과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자료: 보건복지부, (2018. 12.).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1단계 개편 시행결과. 보도자료.

그림 1.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 개선



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2015), 활동보고서.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부과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소득 폐지와 재산·자동차보험료 축소에 따라 취약계층 568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고소득과 고액 재산(상위 2~3%)을 보유한 지역 가입자 37만 세대의 보험료는 상향 조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은 그만큼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된다(김진현, 2017) 그림 1).

(나) 최저보험료 도입

저소득층이나 무자료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대신 최저보험료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보험료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연간 총수입 10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 월 1만 310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는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연간 총수입 336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 월 1만 7460원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현재 최저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과 지원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4년 후의 최저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은 것은 저소득층의 미래 부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정책적 투명성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재산보험료 공제 제도

지역가입자의 소득과약률이 아직 100%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재산보험료를 유지하되 앞으로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 기준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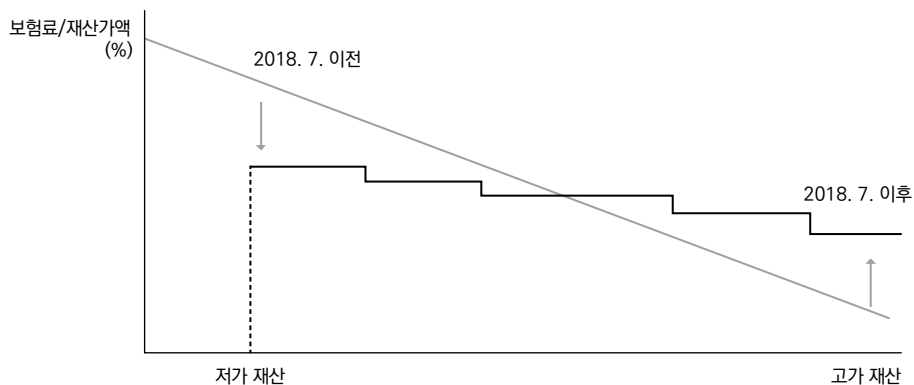
거 목적의 주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산 과표 기준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이전에 비해 재산가액 대비 재산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 개선되었다(그림 2). 즉,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전체적으로 역진성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2018년 7월 이후 저가 재산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가 재산의 보험료는 인상되어 이전에 비해 역진성이 개선되었다.

2) 직장가입자

(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종전에는 고액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있어도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7월 이후에는 연간 3400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를 부과

그림 2.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역진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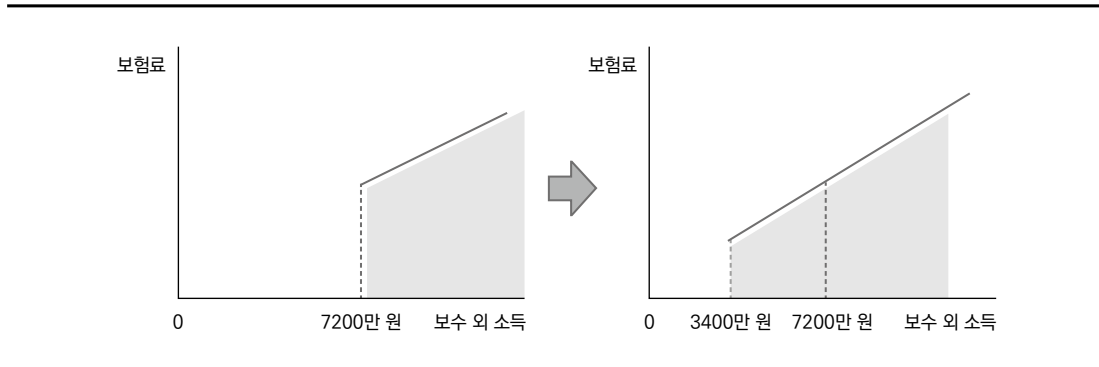
자료: 김진현. (201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방향 및 전망분석.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표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주요 부과 기준		1단계 개편(2018. 7. 1.~2022. 6. 30.)	2단계 개편(2022. 7. 1.~)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연 7200만 원 초과)	34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본인부담 보험료 상한 (월 244만 원)	전전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에 연동 *월 309만 7000원(2018) / 직장(보수,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및 지역보험료 동일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8. 12.),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1단계 개편 시행결과. 보도자료.

그림 3.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자료: 김진현, (201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방향 및 전망분석.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직장가입자는 대략 15만 세대로 추정된다. 여기서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현행처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2분의 1 수준을 유지하였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하이면 0이고 72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개편 이후 이러한 절벽 현상이 상당히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으나(김진현, 2015) 그림 3], 여전히 절벽 현상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과 마찬가지로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유재권, 2017a).

(나) 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선

2018년 개편에서는 보험료의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종전의 월 244만 원에서 전전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에 연동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 상한선의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보험료의 상한선은 309만 7000원으로 설정되었

다. 본인부담 보험료 상한선의 상향 조정은 재원 조달의 형평성과 재정 기여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피부양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기대 효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에 대해서는 피부양자가 무려 2000만 명에 이르는데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이 너무 느슨하여 무임승차가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18년 개편 이전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각각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최대 연간 1억 2000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강화하여 합산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제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재산 요건도 강화되었다. 1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 전환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인상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을 적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28만 세대의 무임승차가 없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표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 개선

주요 부과 기준		1단계 개편(2018. 7. 1.~2022. 6. 30.)	2단계 개편(2022. 7. 1.~)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 각각 4000만 원 초과)	3400만 원 초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	2000만 원 초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
	재산 기준 (과표 9억 원 초과)	과표 5억 4000만 원 초과 5억 4000만 원(3억 6000만 원)~9억 원 재산 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
	형제자매 인정 기준 (형제자매 소득 각 4000만 원 초과, 재산 과표 3억 원 초과 시 탈락)	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인정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억 8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억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피부양자 경감	피부양자 보험료 △30% 경감	-

자료: 보건복지부. (2018. 12.).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1단계 개편 시행결과. 보도자료.

라. 부과 체계 개편의 시행 결과

2018년 7월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아직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아 장기적 성과를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단기적 성과로 저소득 지역가

입자 568만 세대(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1000원 인하되고 고소득·고액 재산 가입자 8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6만 6000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과 체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료의 변동

구분		세대(보험료)
전체	인하	568만 세대(-2만 1000원)
	인상	80만 세대(+6만 6000원)
지역가입자	인하	568만 세대(-2만 1000원)
	인상	37만 세대(+5만 1000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인상	28만 세대(+5만 원)
	인상	15만 세대(+12만 9000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8. 12.).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1단계 개편 시행결과. 보도자료.

소득 외의 부과 요소(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가중치는 2016년 13%에서 2018년 7월 8%로 5%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재정수지는 개편 이후 연간 750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징수율은 개편 이후 93%대(2018년 10월, 93.6%)를 유지하고 있어 개편 전에 비해 가입자의 납부 의사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과 체계 개편 이후 보험료 관련 민원 규모는 감소 추이를 보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4. 나가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고, 관리·운영 체계가 통합된 지 20여 년이 경과되었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지난 수십 년간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며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7월부터 획기적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쟁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소득 중심성이 강화되어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아직 개편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었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과 약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대만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 지 오래다. 지난해의 부과 체계 개편이 건강보험 30년 역사에서 획기적인 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소득 중심에 맞게 더욱 진전된 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 향후의 정책 과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약률 제고, 재산보험료의 비중 축소와 자동차보험료 폐지, 피부양자제도 폐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를 통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통일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 개편의 시행 효과를 면밀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개편안에서는 더욱 공평하고 공정한 부과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2015). 활동 보고서(안).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부자료).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근주. (2016). 건강보험료 보수외 소득 부과와 절차적 정당성. 노동법학, 57, 189-191.
- 김수진, 권순만. (20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예산정책연구, 5(2), 41-65.
- 김진현. (201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방향 및 전망분석.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 김진현. (2017). 건강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정책대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포럼.
- 김진현. (2018. 6. 22.). 20년만의 건강보험료 개편, 소득 중심으로 가는 초석 되어야. 세계일보, p. 25.
- 보건복지부. (2018. 12.).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1단계 개편 시행결과. 보도자료.
- 사공진. (2004).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경제연구, 9, 133-151.
- 신영석. (1998).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정한 부과체계 및 재정운영방안. 보건복지포럼, 26, 14-21.
- 신영석. (2004).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자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98, 20-39.
- 신현웅, 신영석. (2008).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40, 39-55.
- 신현웅. (201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여건진단 및 개선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 유재권. (2017a).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JMAHS, 7(1), 97-105.
- 유재권. (2017b).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개선. AJMAHS, 7(7), 555-563.
- 이규식. (2015).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기틀을 세우기 위한 제언. 의료정책포럼, 13(4), 63-68.
- 정순방. (2016).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법리적 검토-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3(2), 459-484.
- 정창률, 권혁창, 남재욱. (2014). 한국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317-344.
- 정창률, 문용필. (201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 및 향후 과제. 사회보장연구, 33(3), 223-251.
- 정형선. (201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료정책포럼, 13(2), 56-63.
- 최호영, 이소림, 송기민. (201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방향에 대한 법정정책적 소고. 한양고령사회논집, 4(2), 29-52.
- 홍백의, 배지영, 박미희, 강준모. (201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199-231.